

# 建築基準法令の防火規制

## 【構造制限】

耐火建築物等 としなければならない福祉施設等	
3階以上の階に福祉施設等がある	耐火建築物(法27条①一)
2階に福祉施設等が300㎡以上ある	準耐火建築物(法27条②一)

## 【内装制限】

内装制限の対象となる福祉施設等(令128条の4①)	
耐火建築物	3階以上の階の福祉施設等面積300㎡以上
準耐火建築物	2階の福祉施設等面積300㎡以上
その他の建築物	福祉施設等面積200㎡以上

・調理室の火気使用部分の内装は準不燃材料

## 【避難関係】

養護老人ホームでは廊下の幅が1.35m(中廊下は1.8m)以上とする。  
 非常用の照明装置はすべて設置が必要。  
 排煙設備は延床面積が500㎡以上のものに設置。  
 養護老人ホーム、特別養護老人ホーム等の居室は地階に設けてはならない。

9

# 건축기준법령의 방화규제

## 【구조제한】

내화건축물등으로 하지 않으면 안되는 복지시설등	
3층이상의 층에 복지시설등이 있는 경우	내화건축물(법 27조 ①一)
2층에 복지시설등이 300㎡이상 있는 경우	준내화건축물(법 27조 ②一)

## 【내장제한】

내장제한의 대상으로 되는 복지시설등(령 128조의 4①)	
내화건축물	3층이상의 층에 복지시설등 면적 300㎡ 이상
준내화건축물	2층의 복지시설등 면적 300㎡ 이상
기타의 건축물	복지시설등 면적 200㎡ 이상

・조리실의 화기사용부분의 내장은 준불연재료

## 【피난관계】

양호노인홈에서는 복도폭이 1.35m(중복도는 1.8m)이상으로 한다.  
 피상용조명장치는 모두 설치가 필요함.  
 배연설비는 연바닥면적이 500㎡이상일 경우 설치  
 요양노인홈, 특별요양노인홈 등의 거실은 지하층에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10

## 高齢者福祉施設等にかかる消防法上の扱い

- 長崎県大村市のグループホームの火災(平成18年1月 死者7名)を受け、平成19年6月に他の福祉施設等に比べて特に防火安全対策を強化すべきものとして消防法施行令別表第一に(六)項口として特出しで規制
- 口 老人短期入所施設、養護老人ホーム、特別養護老人ホーム、有料老人ホーム(主として要介護状態にある者を入居させるものに限る。)、介護老人保健施設、救護施設、乳児院、障害児入所施設、障害者支援施設(主として障害の程度が重い者を入所させるものに限る。)、老人福祉法第5条の2第4項若しくは第6項に規定する老人短期入所事業若しくは認知症対応型老人共同生活援助事業を行う施設又は障害者の日常生活及び社会生活を総合的に支援するための法律第5条第8項若しくは第10項に規定する短期入所若しくは共同生活介護を行う施設(主として障害の程度が重い者を入所させるものに限る。ハにおいて「短期入所等施設」という。)

11

## 고령자복지시설등에 관한 소방법상의 취급

- 長崎県大村市の 그룹홈화재(2006년 1월 사망자 7명) 사건으로 2007년 6월에 다른 복지시설등에 비하여 특히 방화안전대책을 강화하여야 하는 것으로 소방법 시행령 별표 제 1에(6)항구로서 특출하여 규제
- 口 노인단기입소시설, 양호노인홈, 특별양호노인홈, 유료노인홈(주로 개호상태에 있는 자를 입소시키는 것에 한함), 개호노인 보건시설, 구호시설, 유아원, 장애아입소시설, 장애인지원시설(주로 장애정도가 큰 자를 입소시키는 것에 한함), 노인복지법 제 5조의 2 제 4항 또는 제 6항에 규정된 노인단기입소사업 또는 인지증 대응형 노인공동생활 원조사업을 행하는 시설 또는 장애자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 제 5조 제 8항 또는 제 10항에 규정하는 단기입소자 또는 공동생활 개호를 행하는 시설(주로 장애정도가 큰 자를 입소시키는 것에 한함. 8항에 있어서 「단기입소등시설」을 말한다.)

12





## 高齢者福祉施設等について消防法令上 特に基準を強化している事項

- 防火管理義務対象が収容人員10人以上  
(他の特定用途(たとえば病院等)は30人以上)
- 延面積の下限なく設置義務のある消防用設備等  
消火器、スプリンクラー設備、自動火災報知設備、  
消防機関へ通報する火災報知設備(自火報連動  
義務)、(誘導灯)
- 延面積の下限なく消防用設備等の設置時に消防機関の  
受検義務

17

## 고령자 복지시설의 대하여 소방법령상 특히 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사항

- 방화관리의무대상이 수용인원 10인 이상  
(다른 특정용도 (예를 들면 병원등)은 30인 이상)
- 연면적의 하한없이 설치의무가 있는 소방용설비등  
소화기,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소방기관등으로  
통보하는 화재속보설비(자화보연동의무), (유도등)
- 연면적의 하한없이 소방용설비등의 설치시의  
소방기관의 수검의무

18

表 高齢者福祉施設(現消防法施行令別表第一(6)項口)に対する  
消防法令の規制強化の変遷 ①

改正期日	規制強化の内容	施行期日	既存遡及 適用期日	契機となった火災
1987.10.2 (昭和62年)	スプリンクラー設備(以下「SP」)の設置 基準強化(延べ面積6000㎡以上→1000 ㎡以上)	1988.4.1 (昭和63年)	1996.4.1 (平成8年)	1986.7.31(昭和61年) 神戸市障害者福祉施 設「陽気寮」火災(8名 死亡)  1987.6.6(昭和62年) 東京都東村山市特別 養護老人ホーム「松寿 園」火災(17名死亡)
	屋内消火栓設備等の設置基準の強化 (SP設置基準強化に伴う整備)			
1996.2.16 (平成8年)	火災通報装置の設置義務化(延べ面積 500㎡以上)	1996.4.1 (平成8年)	1998.4.1 (平成10年)	

표 고령자복지시설(현소방법시행령 별표 제1(6)항구)에 대한 소방법령의 규제강화의 변천 ①

개정기일	규제강화의 내용	시행일	기존소급적 용기일	계기가 된 화재
1987.10.2	스프링클러설비(이하「SP」)의 설치기 준강화(연면적 6000㎡이상→1000㎡ 이상)	1988.4.1	1996.4.1	1986.7.31 神戸市장애 자시설「陽気寮」화재 (8명 사망)  1987.6.6 東京都東村 山市특별노인홈「松寿 園」화재(17명 사망)
	옥내소화전설비등의 설치기준의 강 화(SP설치기준 강화에 따른 정비)			
1996.2.16	화재속보설비의 설치의무화(연면적 500㎡이상)	1996.4.1	1998.4.1	

表 高齢者福祉施設(現消防法施行令別表第一(6)項口)に対する  
消防法令の規制強化の変遷 ②

改正期日	規制強化の内容	施行期日	既存遡及適用期日	契機となった火災
2007.6.13 (平成19年)	防火管理者設置基準の強化(収容人員30人以上→10人以上)	2009.4.1 (平成21年)	2009.4.1 (平成21年)	2006.1.8(平成18年) 長崎県大村市グループホーム「やすらぎの里」火災(7名死亡)
	消防機関による設置時検査受検義務の強化(延べ面積300㎡以上→面積制限撤廃)			
	消火器具の設置基準の強化(延べ面積150㎡以上→面積制限撤廃)		2010.4.2 (平成22年)	
	SPの設置基準強化(延べ面積1000㎡以上→275㎡以上)及び代替区画基準等の整備		2009.4.1 (平成21年)	
	屋内消火栓設備の設置基準の強化(SP設置基準強化に伴う整備)		2012.4.1 (平成24年)	
	自動火災報知設備(以下「自火報」)の設置基準の強化(延べ面積300㎡以上→面積制限撤廃)			
	火災通報装置の設置基準の強化(延べ面積500㎡以上→面積制限撤廃)			

표 고령자복지시설(현 소방법시행령 제 1(6)항구)에 대한 소방법령의 규제강화의 변천②

개정기일	규제강화의 내용	시행기일	기존소급 적용기일	계기가 된 화재
2007.6.13 (平成19年)	방화관리자 설치기준의 강화(수용인원 30인 이상 → 10인 이상)	2009.4.1 (平成21年)	2009.4.1 (平成21年)	2006.1.8 長崎県大村市 그룹홈「やすらぎの里」화재(7명 사망)
	소방기관에 의한 설치 시 검사 수험의무 강화(연면적 300㎡이상 → 면적제한 철폐)			
	소화용구의 설치기준의 강화(연면적 150㎡이상 → 면적 제한 철폐)		2010.4.2 (平成22年)	
	SP의 설치기준강화(연면적 1000㎡이상 → 275㎡이상) 및 대체구획 기준등의 정비		2009.4.1 (平成21年)	
	옥내소화전 설비의 설치기준강화(SP설치기준 강화에 따른 정비)		2012.4.1 (平成24年)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기준의 강화(연면적 300㎡이상 → 면적제한 철폐)			
	화재속보설비의 설치기준의 강화(연면적 500㎡이상 → 면적제한철폐)			

表 高齢者福祉施設(現消防法施行令別表第一(6)項口)に対する  
消防法令の規制強化の変遷 ③

改正期日	規制強化の内容	施行期日	既存遡及適用期日	契機となった火災
2013.12.27 (平成25年)	SPの設置基準強化((6)項口(1)と(3) 延べ面積275㎡以上→面積制限撤廃)	2015.4.1 (平成27年)	2018.4.1 (平成30年)	2009.3.19(平成21年) 群馬県渋川市高齢者施設「たまゆら」火災(10名死亡)
	火災通報装置の自火報連動義務化			2010.3.13(平成22年) 札幌市グループホーム「みらいとんでん」火災(7名死亡)  2013.2.8(平成25年) 長崎市グループホーム火災(5名死亡)

표 고령자복지시설(현 소방법시행령 제 1(6)항구)에 대한 소방법령의 규제강화의 변천③

개정시기	개정 및 규정강화내용	시행일	기존 소급 적용 날짜	법령 개정에 영향을 미친 화재사건
2013.12.27 (平成25年)	SPの設置基準強化((6)項口(1)と(3) 延べ面積275㎡以上→面積制限撤廃) SP설치기준강화((6)항구(1)과 (3) 연면적 275m2 이상 -> 면적제한철폐)	2015.4.1 (平成27年)	2018.4.1 (平成30年)	2009.3.19(平成21年) 群馬県渋川市고령자시설「たまゆら」화재(10명 사망)
	火災通報装置の自火報連動義務화재속보설비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연동 의무화			2010.3.13(平成22年) 札幌市그룹홈「みらいとんでん」화재(7명 사망)  2013.2.8(平成25年) 長崎市그룹홈 화재火災(5명 사망)